

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·공시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95일
신청인	상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)	대표자	
	주된 영업소 소재지	전화번호	
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	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	
	① 보유업종		
② 건설사업관리실적		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	

건설공사 · 건축설계 · 엔지니어링사업 · 감리용역 실적					
건설공사 실적			건축설계 실적		
업종	기성금액 (백만원)	총기성금액 (백만원)	용도	건축허가면적 (㎡)	총건축허가면적(㎡)
토목			주거용		
건축			상업용		
산업 · 환경설비			공업용		
조경			문교/사회용		
③ 전문공사			그 밖의 용도		
엔지니어링사업 실적			감리용역 실적		
④ 전문분야	계약금액 (백만원)	총계약금액 (백만원)	감리종류	계약금액 (백만원)	총계약금액 (백만원)
			전면책임감리		
			부분책임감리		
			시공감리		
			검측감리		
			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		
그 밖의 분야			다중이용시설		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·공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.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5.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(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) 나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. 평가·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려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·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(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합니다)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	수수료 「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 규칙」 제38 조 제 2 항 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	---

작성방법

1. ① 보유업종란은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등 보유업종을 기재합니다.
2. ② 건설사업관리실적란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에 기재합니다.
3. 건설공사실적 중 ③ 전문공사란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별 공사실적을 기재합니다.
4.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중 ④ 전문분야란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기술부문 중 건설부문의 13개 전문분야 중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6개 분야까지 기재하되, 7개 분야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하여 그 밖의 분야란에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